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3-02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 처분이 예정된 기업에 대하여 '청문 실시 및 의견제출 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공고 기간 : '23. 1. 25(수) ~ '23. 2. 8(수)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

3. 청문 대상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 사유 : 붙임 참조

* (사)한국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가 사후관리한 결과, 40개사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통보함

4. 근거 규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메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메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메인비즈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청문 실시 및 의견 제출

가. 청문 일시 : ’23. 2. 24.(금) 10:00

나. 청문 장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회의실

* 청문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다. 청문 주재자 : 변호사 조○○

라. 청문 대상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必

* 대리인 출석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사전 제출

마. 의견 제출 : ’23. 2. 22.(수) 18:00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오프라인)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 (전자우편) kbk1206@korea.kr

바.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 사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31-201-69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인증일	소재지	취소 사유 (발생일)
1	주식회사 금빛	김*석	2020-09-26	부천시 산업로104번길 14(오정동)	폐업 (2021-11-17)
2	㈜패션 앤 스타일	박*희	2020-03-31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152번길 44-25(1, 2동 1호)	폐업 (2022-07-31)
3	㈜팬시마음	김*익, 김*군	2020-01-30	하남시 초일로 219(초일동)	폐업 (2020-12-31)
4	㈜옵투스테크널로지	이*주	2020-05-23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805호(관양동, 안양스마트베이2)	폐업 (2021-11-19)
5	펠라텍스㈜	이*호	2020-05-26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803(신곡동, 골드프라자 802)	폐업 (2021-12-02)
6	㈜선인유니텍	최*춘	2020-05-23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34, 에이동302호	폐업 (2021-12-31)
7	그린팩	김*필	2020-05-20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742번길 22-13	폐업 (2022-04-25)
8	대운이엔지 주식회사	김*태	2020-07-13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31, 1층(원종동)	폐업 (2022-09-30)
9	한국기초금속㈜	이*노, 김*배	2020-06-08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로774번길100-29	폐업 (2021-02-04)
10	두리씨앤에스 주식회사	도*완	2020-12-10	부천시 신흥로 333, 3층(도당동)	폐업 (2021-09-30)
11	대진산업	김*수	2020-11-05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84	폐업 (2020-12-31)
12	한국에스피아이	방*남	2020-12-01	하남시 동남로424번길 133-43(감일동)	폐업 (2022-06-17)
13	제경산업	원*돈	2020-09-23	화성시 안녕남로142번길 17-6(안녕동)	폐업 (2021-08-31)
14	㈜와이티티코퍼레이션	김*우	2020-09-01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16, A동(대야동)	폐업 (2022-08-10)
15	인터지에스지㈜	양*순	2021-02-08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광교 SK 뷰레이크 A동 2706호(하동)	폐업 (2022-10-11)
16	주식회사 바로건설	문*권	2021-01-28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4, 2층 203호(원미동)	폐업 (2021-05-31)
17	㈜제이씨이엔지	장*철	2021-05-12	오산시 독산성로 425, 1043호(세교동, 더퍼스트타워세교)	폐업 (2022-06-01)
18	주식회사 태성	김*학	2021-01-31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28(원시동)	폐업 (2022-06-15)
19	㈜일진저스템	이*각	2021-07-11	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로 100	폐업 (2021-12-31)
20	크리스탈팜스㈜	최*현	2021-10-06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1253번길 78-9	폐업 (2022-04-04)
21	국제전기	양*혁	2021-11-12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498-1, 다동 1층	폐업 (2021-11-22)
22	노스타일㈜	황*삼	2021-08-02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B동 834호(구미동)	폐업 (2022-09-08)
23	주식회사 에스엠프로토	최*철	2021-12-08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2로21번길 26, a동 2호(성곡동)	폐업 (2022-08-19)
24	미래테크	이*훈	2021-06-08	시흥시 목감둘레로 80, 605동 1202호(산현동, 호반베르디움 더숲)	폐업 (2022-08-3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